

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5] <신설 2022. 7. 20.>

신고 대상인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

비료의 기준(제16조의4 관련)

1. 보통비료

종류	비료의 중량 또는 용량 기준
가. 질소질비료, 인산질비료, 칼륨질비료, 복합비료, 석회질비료, 규산질비료, 고토비료	1,000킬로그램 또는 1,000리터를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
나. 미량요소비료	20킬로그램 또는 20리터를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
다. 석회처리	2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
라. 상토1호, 상토2호	1,400리터를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
마. 제오라이트, 벤토나이트, 아미노산발효부산물액, 부산동물질액, 아미노산발효부산물박	20킬로그램 또는 20리터를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
바. 재, 숯	1,0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

2. 부산물비료: 신고 대상 비료는 1,000킬로그램 또는 1,000리터를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로 한다.

비고: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의 중량 또는 용량은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 및 비료수입업자 보증표에 기재된 실중량 또는 실용량으로 한다.